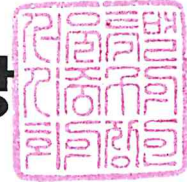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사의 보안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CCTV 시스템 추가 설치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10. 25.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



1. 사 업 명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CCTV 추가설치
2. 설치목적 : 중구의회 청사 보안 및 시설물 관리
3. 시행기관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
4. 관련근거
 -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-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5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2. 10. 25. ~ 2022. 11. 13.(20일간)
6. 행정예고방법 : 중구의회 홈페이지 (council.junggu.seoul.kr) 게시

7. 주요내용

- 설치대수 : 신규설치 1대 (기존 CCTV 성능개선 9대)
- 설치장소 : 중구의회 청사 내(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, 2층)
- 촬영범위 : 복도, 현관, 로비
-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/녹화

8. 의견제출

- 제출기간 : 2022. 10. 25. ~ 2022. 11. 13.(20일간)
-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 또는 방문 제출
- 제출서식 : [붙임 1] 의견제출서
- 제출내용 : 상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, 제출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- 제출처

가. 우편 : 우편번호) 0456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, 2층
중구의회사무과 의정팀

나. 팩스 : 02-3396-9053

※ 방문 접수는 09:00~18:00 근무시간 내 / 공휴일 제외

- 문의처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의정팀 (☎ 02-3396-8159)

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